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공보담당자 차장검사 한기식
전화 063-259-4302 / 팩스 0502-193-8077

보도자료

2025. 4. 24.(목)

제 목

前 대통령 자녀 가족 태국 이주 부당 지원 뇌물수수 등 사건 수사결과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및 관련 사건을 공소제기 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의 불기소 사건(제10조 제1항 제2호, 제3호)
 - 피의자, 처분일시, 죄명, 처분주문, 수사경위, 수사상황 및 수사의 의의 등(제10조 제2항)
 -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이 승인이 있는 경우 혐의사실 요지, 불기소이유 요지,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제10조 제4항)

-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박영진)은 오늘(4. 24.) 직무관련자가 지배하는 태국 내 항공사에 사위를 취업시켜 '18. 8.부터 '20. 4.까지 급여 및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 원을 수수한 前 대통령 A를 딸 C, 사위 D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공범으로, A에게 뇌물을 공여한 前 국회의원, 공공기관장, 기업인이었던 B를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각 불구속 기소하고, C, D를 각 불기소처분(기소유예)하였음
- 전주지방검찰청은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아 수사한 결과,
 - ① B가 지배하는 태국 항공사가 임직원의 채용 계획이나 필요가 없었음에도 B의 지시에 따라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A의 사위를 상무 직급으로 특혜 채용하는 등 태국 이주 과정을 전폭 지원한 사실,
 - ② C, D가 단순히 정해진 뇌물을 받는 수동적인 지위에 그치지 않고 B로부터 받을 경제적 이익의 내용·규모 결정에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등 뇌물의 단순 수혜자를 넘어 범행의 쏠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사실,
 - ③ A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하여 사위 D의 채용 과정 및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사실,
 - ④ C가 B로부터 제공받은 급여 등을 바탕으로 임대 목적의 부동산 매입 등 생계 유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을 확인하였음
-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권력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엄정 대응하겠음

1

사건관계인 및 공소사실 요지

① 사건관계인

- A(72세, 前 대통령)
- B(62세, 前 국회의원, ○○공단 이사장, ○○○항공 창업주)
- C(41세, 前 대통령 A의 딸)
- D(45세, 前 대통령 A의 前 사위)

②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 A

- 딸 C 및 사위 D와 공모하여, 정치인·기업인·공공기관장으로서 직무관련자인 B가 지배하는 태국 소재 甲 항공사에 D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게 한 후, B로부터 '18. 8. 24.경부터 '20. 4. 30.경까지 D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합계 4,160,705바트(152,833,679원 상당), '18. 8. 14.경부터 '20. 3. 4.경까지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합계 1,784,927바트(65,039,635원 상당) 등 총 5,945,632바트(217,873,314원 상당)를 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피고인 B

- 대통령인 A의 사위 D를 자신이 지배하는 甲 항공사에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한 후, A의 직무와 관련하여 '18. 8. 14.경부터 '20. 4. 30.경까지 D에 대한 급여,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총 5,945,632바트(217,873,314원 상당)를 공여 **[뇌물공여]**
- 피해자 甲 항공사의 현지 운영자인 E와 공모하여, 태국 소재 甲 항공사(이하 피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직원 채용 필요성이 없었던 피해 회사에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 등을 전혀 갖추지 못한 D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고 '18. 8. 14.경부터 '20. 4. 30.경까지 D에 대한 급여,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총 5,945,632바트(217,873,314원 상당)를 지급하여 손해를 가함 **[업무상배임]**

2

주요 수사 경과

- '21. 12. 6. 시민단체의 고발장 제출로 수사 개시
- ~ '23. 10. ○○○항공, 甲 항공사 관련자 조사, 사무실 및 주거지 등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 '23. 11. ~ '25. 3. 중소벤처기업부, ○○공단, 대통령기록관, 통일부 및 주요 관련자 주거지 등 압수수색, 계좌추적

前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비서관, 인사수석비서관, 대통령 경호처장, 민정비서관, 인사비서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 등 주요 관련자 및 ○○공단, ○○○항공, 통일부, 청와대 관계자들 조사
- '24. 1. ~ 2. D 조사(총 3회, 진술 거부)
- '24. 4. ~ '25. 2. 피고인 B 조사(총 3회, 진술 거부)
- '24. 6. ~ '25. 2. A 계좌추적, C 주거지 압수수색, 전자정보 선별 등
- '24. 10. ~ 11. C 소환 요구, 출석 불응
- '25. 2. C에 대한 뇌물수수 고발사건 수리

※ 시민단체가 C를 뇌물수수죄 공범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이송받아 수리
- '25. 2. ~ '25. 4. 피고인 A 조사 불응

※ 수회에 걸친 조사 기일 협의에 무대응 및 2차례 출석요구 불응, 이후 A가 서면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답변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여 서면조사 질의서를 송부하였으나 답변서 미제출
- '25. 4. D 공범 인지
- '25. 4. 24. 피고인 A 및 B 불구속 기소, C 및 D 기소유예

① 대통령 가족에 대한 특혜 채용 및 태국 이주 부당 지원 사실 확인

- 甲 항공사의 D 채용의 실체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사 업무에 적합한 임직원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 이고, D가 받은 급여는 정상 급여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뇌물임을 확인하였음
- ① 甲 항공사는 D 채용 당시 항공기 운항을 위한 항공운항증명(AOC) 취득은 물론, 그에 선행되는 항공사업면허(AOL) 취득도 지연되고 있어 아무런 수익이 없었고, 그로 인하여 긴축 재정을 펼치는 상황이었으므로 임원 채용 필요성이 전혀 없었음
- ② D는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이 전혀 없어 특별한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메일 수발신 등 단순 보조 업무만을 수행하고, 빈번하게 장기간 자리를 비우고 국내로 귀국하거나 재택근무라는 명목으로 출근을 하지 않으며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상무라는 직급에 걸맞는 정상적인 근로도 제공하지 않았음
- ③ B는 '18. 4. 청와대 방문 직후부터 ○○○항공뿐만 아니라 甲 항공사와 관계 없는 ○○공단 직원들까지도 동원하여 C의 가족이 생활할 태국 내 주거지, C의 아들이 다닐 국제학교 정보 등을 파악하여 청와대 민정비서관 G,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 H를 통해 C, D에게 제공하였고, ○○공단 태국 현지 직원을 통해 C의 태국 사전 방문시 공항 응대, 일정 동행, 통역인 섭외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음
- ④ B는 甲 항공사 현지 운영자 E에게 ‘월 급여 800만 원, 상무 직급, 주거비 제공’의 조건으로 D 채용을 지시하였는데, 위 급여는 甲 항공사의 대표이사보다 2배 이상의 고액이었으며 주거지는 월차임 350만 원이 넘는 고급 맨션이었는데, B는 C 가족의 태국 생활에 필요한 파격적이고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한 것임

② 대통령 A와 정치인·공공기관장·기업인 B의 직무관련성

- 대통령 A는 국가원수이자 정부 수반으로서 각 행정부처 및 공공기관, 기업체, 정당 활동에 직무상 또는 이와 밀접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A와 B는 직무상 관계 외에 개인적으로 가족에 대한 도움을 주고받을 별다른 친교 관계도 없었는바, B는 다음과 같이 A로부터 각종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 대통령 뇌물 사건에서의 직무관련성에 대한 기존 판례 법리는 첨부 참고자료 참조

- ① B는 정치인으로서 '16. 3.경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차기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도모하는 등 정치적인 재기를 계획하고 있었고, A의 제19대 대선캠프에서 직능본부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A의 대통령 당선에 기여하여 향후 공천 등 정치적 활동에 있어 A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 ② B는 '17. 12.경 대통령비서실에 의해 ○○공단의 이사장으로 내정된 후 전임 이사장의 직무수행계획서를 전달받아 지원 서류 작성에 활용하고, 3명의 후보자 중 B에 대하여만 인사 검증이 실시되는 등 대통령 비서실의 부당 지원 아래 '18. 3. 대통령 A에 의하여 ○○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는바, 공공기관장으로서 위 공단의 운영 및 '20. 4. 예정된 차기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면직 등에 있어 A의 각종 권한 행사를 통한 편의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 B는 실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위해 '20. 1.경 면직 신청을 하였고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수사 중(추후 유죄 확정)이었음에도 면직된 후 공천되었는바, 당시 B의 면직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대통령비서실의 공공기관장 관리방침에 의하여 국회의원 선거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음

- ③ B는 ○○○항공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기업인으로서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 정책을 기회로 정치적 입지를 넓히고 사업범위를 확장하고자 '18. 3. 평양 방북 예술단 전세기를 띄우고, 이후 북한 전세기 취항 신사업을 추진하였는바, 이러한 사업의 계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운항사 선정·노선 배분·항공 보험을 대체하는 지급보증 제공 등의 조치가 필요하였음

※ 실제 '18. 3. 평양 방북 예술단 전세기 운항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회 동의 없이 수천억원 규모의 항공보험을 대체하고, UN, 미국 등의 대북제재 위반으로 인한 잠재적 손해까지도 모두 담보하는 포괄적 정부보증이 실시된 사실도 확인됨

③ 대통령의 범행에 대통령의 딸과 사위가 가담한 사실 확인

-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제3자가 사전에 일치된 의사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제3자가 뇌물을 수수한 경우 모두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함

- ①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대법원 2018도2738 판결)
- ②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은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제3자가 될 수 없고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제3자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음(위 대법원 판결)

- C와 D는 능동적 행위를 통해 뇌물수수 범행의 완성에 필요한 주요한 역할을 하였음

- ① C와 D는 '18. 4.부터 '18. 5. 사이 청와대 민정비서관 G,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 반장 H로부터 평소 친분이 전혀 없던 B의 신분 및 B가 준비한 태국 현지 정보, 甲 항공사의 위치 등을 전달받아 당시 아무런 연고가 없던 태국 이주를 직접 결정하였음
- ② C는 D의 채용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이었음에도 미리 태국 현지를 답사하여 국제학교의 위치를 확인하고, B를 통해 소개받은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 A의 반려전을 키울 수 있는 여건 등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갖춘 맨션을 주거지로 결정하는 등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규모 결정에 적극 관여하였음
- ③ C가 태국 현지에서 생활할 주거지를 결정하자, 그 차임 등은 D에 대한 채용 조건에 그대로 반영되었음
- ④ D는 자신의 채용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던 甲 항공사의 현지 운영자 E에게 먼저 연락하여 'B 의원에게서 들은 것이 없느냐'라며 B의 지시 사실을 확인하고 채용을 요구하였고, 정식 근무 전 B가 주재한 ○○○항공·甲 항공사 임원진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하기도 하였음

- ⑤ D는 甲 항공사에 출근하는 외형을 갖추어 금전적 이익 수수를 정당화하려 하였으며, '19. 1.경 자유한국당 광상도 의원의 의혹 제기로 대가성 취업이 문제가 되자 가명을 사용하거나 수개월간 재택근무를 병자하여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도 월급은 계속 수령하는 등 뇌물수수 및 수수 과정에서의 범행 은폐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

④ 청와대 소속 공무원들의 관여·지원 사실 확인

-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감찰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 민정비서관 G, 특별 감찰반장 H는 C 가족의 태국 이주 준비과정에서부터 B와 긴밀히 연락하면서 B로부터 전달받은 주거지 및 국제학교 정보, 제공될 경제적 지원의 규모 등을 C 가족과 공유하는 등 적극 관여하였음
- H는 '18. 4. ~ 5.경 식당, 카페 등지에서 수차례 C를 만나 태국 이주에 관해 논의하면서 태국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의 연락처, C의 자녀를 입학 시키고자 하는 국제학교 측의 요청사항 등을 전달하여, C로 하여금 이를 기초로 태국 이주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였음
- 당시 B와 C, D는 서로의 연락처조차 없는 등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는 사이였는바, G, H는 B와 C, D 사이를 중개하면서 C 가족의 태국 이주 과정 전반을 지원한 것임
- 한편 대통령경호처는 '18. 6.경 C 가족의 태국 이주 및 D의 태국 내 항공사 취업 사실을 전제로 C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A에게 보고하였음
- A는 현지 정보, 경호 인원 등을 포함한 구체적 경호 계획을 보고받은 후 이를 승인하였고, 그에 따라 C 가족에 대한 해외 경호가 개시되었음

⑤ 태국 이주 배경 및 수뢰액의 사용처

- A는 과거 무직 상태로 별다른 소득 없이 생활하던 C, D에게 주거 비용 등을 지원하고 사위 D의 취업을 청탁하여 D로 하여금 '16. 2.경 게임회사에 취업하게 해주는 등 생활에 필요한 여러 지원을 해 주어 오던 중,

- '18. 초순경부터 D가 A의 반려전 이름을 딴 게임회사에 근무 중인 사실 등 C 가족과 관련된 연이은 언론보도로 '18. 2.경 D가 위 회사에서 퇴사하여 C, D의 소득이 재차 단절되게 되었고, A는 다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화를 겪게 된 C, D의 생계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A는 B의 지원을 받아 C, D가 태국에서 거주할 고급 주택의 임차비용은 물론 D의 급여를 가장한 금원으로 손자의 국제학교 학비와 생활비 등 C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할 기반을 마련해 주었고,

- 나아가 C는 위 금원 중 일부를 자신 명의의 서울 소재 임대용 다가구 주택 매입에 사용한 뒤 월세 수익을 얻는 등 수수 뇌물이 C의 소득 창출과 자산 형성 수단으로도 사용되었음

※ 위 과정에서 C는 태국 현지 경호관에게 외화를 지급한 뒤 이를 환전하여 자신의 국내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반 차원에서 매수할 부동산을 사전 답사하고 특별감찰반장 H가 C의 위임장을 받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을 대신 처리하기도 하였음

6 고발 사실을 중심으로 절제하면서도 철저한 수사 진행

●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 A가 자신의 포괄적 권한 행사를 통한 정치적·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정치인이자 공공기관장, 기업가인 B로부터 B가 지배하던 항공 업체를 통해 A의 자녀 부부의 태국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임

●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을 비롯하여 前 대통령측 핵심관계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여 확보한 객관적 자료와 다수의 참고인 진술 등 증거를 폭넓게 수집하여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였음

● 검찰은 고발 사실을 중심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수사 착수 경과와 사건의 의미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신분의 前 대통령 및 뇌물공여자만 공소 제기함으로써 기소권을 절제하여 행사하였음

● 딸 C와 전 사위 D는 공무원 신분인 A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기는 하나,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 A와 공여자 B를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A와 C, D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하였음

4

향후 계획

-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권력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엄정 대응하겠음 ▣

[참고 : 대통령에 대한 뇌물 사건에서의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례]

-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그러한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 364, 박근혜 前 대통령의 뇌물 사건 판결, 대법원 확정)
- ② 판례는 이러한 대통령의 광범위한 직무권한의 특성에 비추어 이익제공자와 대통령 사이의 구체적 현안을 요구하지 않는 포괄적 대가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각 행정부처 및 공공기관의 임원 임명에 미치는 대통령의 영향력은 인사권자로서 가지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권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
- 나아가 국회의원 공천에 대하여도 대통령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는 아니나, 대통령이 사실상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대통령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40, 이명박 前 대통령의 뇌물 사건 판결, 대법원 확정)